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27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46172 취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특별시 ◯◯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3구단5859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6,815,940원(가산세 38,218,140원 포함), 지방교육세 11,408,250원(가산세 1,242,73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7,605,490원(가산세 828,48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27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27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그 취득의 원인행위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매각·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27

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명백히 밝혀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 원고는 2021. 6. 16.에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2020. 5. 10. 합의해제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계약해제신고서에 첨부된 '증여 해지합의서'의 작성 일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바, 이는 증여 해제의 진정성 여부, 증여 해제의 시점 등에 관하여 의문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정황으로서 피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추징 사유 중 특히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어 위 규정의 추징사유 중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분을 충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는 추징사유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위 추징사유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27

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해 주려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의 취지에 반하여 이를 정해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고, '미만'의 의미가 일정한 수효나 정도에 차지 못하거나 그런 상태 혹은 기준 수량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의미하는 사정(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고려해 볼 때, 위 추징사유에서 말하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있음에도 2년 미만인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20. 4. 6.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기로 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각 토지를 전통사찰인 원고의 예불 등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추징사유의 요건 중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라는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3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별도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제3호의 문언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위 제3호의 추징사유에는 포함되지 아니함이 해석상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27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

판사 신○○

판사 정○○